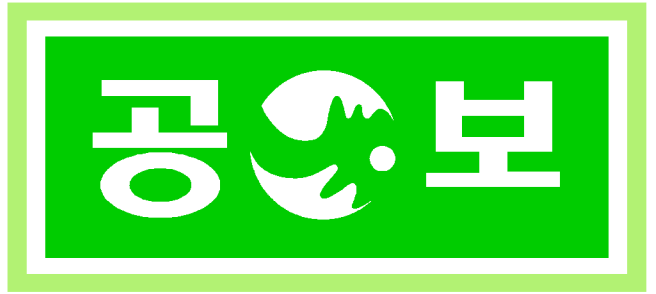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간	기 관 의 장



제 1120 호 2018. 5. 17.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2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4호[『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5호[도로명주소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6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8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1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632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취소 공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634호[「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2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2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명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장(도시개발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교량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진장동 287-4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 일시 : 728㎡

영구 : 5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18. 05. 10. ~ 2018. 08. 31.

영구 : 2018. 09. 01.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 - 124호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변경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곡천 주변 유역이 도시화되고 거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천 오염이 심화되고 훼손됨에 따라 천곡천 내 생태하천 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코자 함
 - 개 요 : 하천환경 정비 L=1.7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천곡문화센터 ~ 천곡동 동천강 합류부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복구청)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착수일 : 2017. 10.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8.
 - 변경 착수일 : 2017. 9.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9.

6.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지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시행청 비치 (북구청 건설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구 분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사 업 비	4,000	1,518	1,542	940

9. 공사에정공정표 : 시행청 비치 (울산북구청 건설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천곡천(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 '천곡천 하천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1호)'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설과(☎052-241-7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상인동	358	16	임	36	1	**건설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블록 *웃트	울산광역시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	임유 가압류
2	상인동	358	29	임	2	1	**건설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블록 *웃트	****보증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	가압류
3	상인동	358	35	임	18	1	**건설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블록 *웃트	한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4	상인동	359	2	답	73	1	이**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보증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	가압류
5	친곡동	383	2	휴	3	1	홍**	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435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	가압류
6	친곡동	284	2	답	79	1	이**	울산광역시 북구			
7	친곡동	366		답	2783	1	김**	울산광역시 북구			
8	친곡동	424		답	93	1	박**	울산광역시 북구			
9	친곡동	425	1	답	1,484	1	김**	울산광역시 북구			
10	친곡동	427	2	답	1,818	1	최**외 2명	울산광역시 북구			
11	친곡동	428		답	869	1	김**	울산광역시 북구			
12	친곡동	431		답	2,403	1	이**외 1명	울산광역시 북구			
13	친곡동	484	1	답	1,079	1	최**	울산광역시 북구			
14	친곡동	484	2	답	579	1	최**	울산광역시 북구			
15	친곡동	484	3	답	714	1	이**	울산광역시 북구			

등기부등본에 의거하여 작성함.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25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1길 130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5.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순번	종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877-2,3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83-34	2018-05-17	기존 자연마을인 음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641	울산광역시 북구 동남로 507-2	2018-05-17	농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노르라서 농너로로 구이	2011-02-11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3B 8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9길 12	2018-05-17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내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당시동 423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903	2018-05-17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62-7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1	2018-05-17	용바위가 있는길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92-9	울산광역시 북구 증원지1길 130	2018-05-17	기존 자연마을인 증원지 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 - 126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연포동 76-7	세창터4길 29	2018. 5. 17.	신청에 의한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5.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2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새장터4길 29	염포동 76	2018. 5. 17.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5. 1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28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8. 5.16.	2018 -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2	박판기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2일원	19.125	기간 변경 전 2013. 1. 1. ~ 2018. 12.31 기간 변경 후 2018. 6. 1. ~ 2022. 5. 31.	활어도소매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기간 변경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8. 5.16.	2018 -7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 1길 83	박찬훈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 1길 83일원	1.4	기간 변경 전 2017. 8. 29. ~ 2018. 8.28. 기간 변경 후 2018. 6. 1. ~ 2022. 5. 31.	활어수족관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기간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632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취소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등록번호 : 제2016-1호
2. 업 소 명 : 시민의발 정비서비스(주)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46 (효문동)
4. 대 표 자 : 김 성 주
5. 정비 및 검사항목
 - 정비분야 : 휘발유·LPG, 경유
 - 확인검사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 매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6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1)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다. 지원, 영업자의 협조, 포상

1)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2)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3)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라. 연합회 구성, 운영현황 점검 등

1)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2)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10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 자치단체의 사무(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물가지도 단속 등)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상공인의 범위 등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 전화번호 : 052-241-7705,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구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지정 및 취소)**
-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 월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